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**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**을 이에 공포한다.

**대 통 령 문 재 인** 인

2019년 9월 10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 유은혜  
교육부장관

●**대통령령 제30072호**

**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**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1조의2를 준용하고,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1조의2제4항 및 제34조제3항 중 “시험실시기관의 장”은 “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”으로 본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사의 신규채용에서 의사상자 등 우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험부터 적용한다.

◇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의사자의 배우자·자녀, 의상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·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교육공무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해당 대상자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사자의 배우자·자녀와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,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·자녀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가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**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**을 이에 공포한다.

**대 통 령 문 재 인** 인

2019년 9월 10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 조명래  
환경부장관

●**대통령령 제30073호**

**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**